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고려열연(주)(김성진), ② 대림산업(주)(배원복), ③ (주)허브구조 엔지니어링(김형만), ④ 공주대학교산학협력단(임경호)

나. 전화번호 : ① 054-278-9111, ② 02-2011-8233, ③ 070-4789-1993, ④ 041-521-9493

2. 명칭 : 띠철근 사이에 평면상 팔각형의 나선형 보조 띠철근이 연속되는 철근콘크리트 각형기둥 횡보강용 나선형 띠철근 공법(KSS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철근콘크리트 / 철근 가공 및 조립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기둥의 모서리에 배치되는 주철근을 횡구속하는 평면상 사각형 형상의 띠철근 사이에 기둥의 각 변에 배치된 주철근을 횡구속하도록 일정한 피치를 갖되 평면상 팔각형 형상을 이루는 나선형 내부 보조 띠철근이 연속되게 공장가공된 나선형 띠철근을 이용하여 심부 콘크리트의 구속 효과와 주철근의 좌굴을 방지하여 기둥의 연성능력과 에너지 소산능력을 향상시키는 철근콘크리트 각형기둥 횡보강용 나선형 띠철근 공법이다

<범위>

기둥의 모서리에 배치되는 주철근을 횡구속하는 평면상 사각형 형상의 띠철근 사이에 기둥의 각 변에 배치된 주철근을 횡구속하도록 일정한 피치를 갖되 평면상 팔각형 형상을 이루는 나선형 내부 보조 띠철근이 연속되게 제작 및 시공되는 철근콘크리트 각형기둥 횡보강용 나선형 띠철근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601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브릿지스탠다드㈜(박영제), ② 계룡건설산업㈜(이승찬), ③
 ㈜홍익기술단(성낙전)

나. 전화번호 : ① 032-429-4537, ② 070-4470-7287, ③ 031-440-9741

2. 명칭 : 보강강판의 제거에 의해 추가 압축력이 도입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의 제작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거더

<기술의 요지>

본 신청 기술은 I형 콘크리트 거더의 상부플랜지에 H형강과 보강강판을 설치하여 일체로 하고, PS 강연선에 의해 압축력 도입 후, 거더 거치 전 제작장 바닥에서 보강강판을 제거함으로써 PS 강연선에 의해 도입된 압축력의 손실을 만회 또는 추가 압축력을 도입하는 기술로, 교대 및 교각 위에서 2차 긴장 작업을 배제함으로써 시공이 간단하여 공사기간 단축 및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경간, 저형고의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 공법이다

<범위>

I형 콘크리트 거더의 상부플랜지에 H형강과 보강강판을 설치하여 일체로 하고, PS 강연선에 의해 압축력 도입 후, 거더 거치 전 제작장 바닥에서 보강강판을 제거함으로써 PS 강연선에 의해 도입된 압축력의 손실을 만회 또는 추가 압축력을 도입하는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 제작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60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기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운수종사자 음주여부 확인 등 관련 의무가 부여되어 있음에도 버스 음주운전이 발생하고 있어, 행정처분 기준 강화로 근절 필요

나. 광역급행버스(M버스) 사업계획 변경 업무 권한 위임이 일부 누락·중복되어 업무처리에서 혼선 발생으로 위임 조항 정비 필요